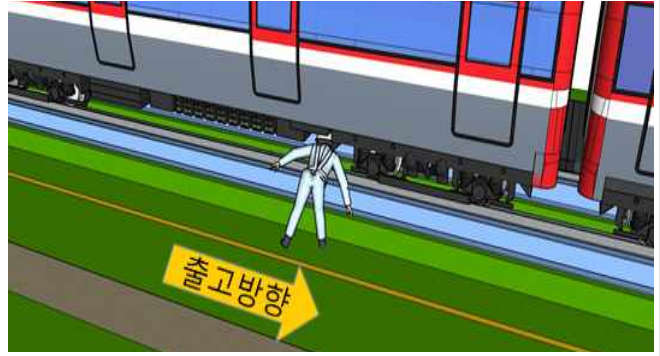




재해개요

- 2022. 3. 14.(월) 23:05분경 대전광역시 □□구 소재 ○○○ 검수고 내, △△ 옆 바닥에서 재해자가 엎드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▽▽ 옆 작업자가 발견한 재해임



재해발생 원인

- **입환* 작업 시 끼임 등 위험상황 발생 가능성에도 위험상황 경고 조치 등 미실시**
 - 작업자가 점검과 정비를 수행하는 검수고 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운행하는 열차에 의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열차 출발 이후부터 출고가 완료될 때까지 인근을 확인하고 작업자와 기관사에게 위험상황을 경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음
 - 위험성평가 시 현재 안전보건조치에 유도자를 배치하고, 검수고 내 차량 한계선 도색을 안전대책으로 제시하였으나, ① 수송원이 좌·우 확인 후 객차에 탑승하여 진행방향을 감시하는 구조 및 ② 기관사의 진행방향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, 진행 중인 차량 측면에서의 부딪힘 등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

* 입환 : 차량의 분리, 결합, 차량의 선로를 바꾸는 등의 작업



재해예방 대책

- **입환 작업 시 접촉위험 확인 및 신호 철저**
 - 열차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작업자와 신호하여 접촉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전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함
- **열차 및 선로 감시방법 마련**
 - 객·화차를 견인하는 입환기 운행 시 기관사와 의사소통하는 유도자를 배치하고, 유도자가 근로자의 추락·충돌·끼임 등의 위험 요인을 감시하면서 입환기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함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